

02

장기요양급여제공 서비스 종류

1) 방문요양

- 신체활동 지원: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
- 일상생활 활동 지원: 가사 활동, 개인활동,
정서지원, 우애서비스
- 인지기능 유지 지원: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
잔존능력 유지



2) 서비스 제공범위

- 수급자의 일상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 지원을
위한 재가 서비스
- 행위금지: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, 수급자
가족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,
그 외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



서비스 계약

계약대상

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(보호자)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.

계약기간

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,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. 단,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원 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계약목적

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(정서적지지 및 지원강화)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 보강과 보호자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,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.

계약내용

계약당사자, 계약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, 비용, 비급여 대상, 대상별 항목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.

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

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및 「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」에 따른다.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. (다만,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)

- ①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%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, 85%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. (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,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%, 9%만 부담한다.)

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, 수급자(보호자)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.

③ 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.

[등급별 월 한도액]

(단위 : 원)

구 분	1 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월 한도액(원)	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	643,700

[방문요양]

(단위 : 원)

분 류	30분	60분	90분	120분	150분	180분	210분	240분
방문요양	16,630	24,120	32,510	41,380	48,250	54,320	60,530	66,770

※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(야간가산 20%, 심야 및 휴일가산 30%)

기타 비용부담

- ①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대상자(또는 보호자)는 매월 실비납부 하여야 한다.
- 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지불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계약 내용에 해당 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(또는 보호자)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

- 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
 1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 2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.
 1. 비용 변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.
 2. 해당사항에 대해 “장기요양급여제공(변경)계약서” 를 별도 작성한다.

신원인수 인의 권리 및 의무

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(이하 ‘보호자’에 포함)을 지정하여야 하며,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 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① 신원인수 인의 권리

1.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
2.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3.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연락 받을 권리
4. 월 급여이용명세서, 본인부담금액 영수증 등을 제공 받을 권리
5. 수급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
6.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② 신원인수 인의 의무

1.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
2.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
3.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
4. 장기 출장이나 출타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

서비스 제공자의 의무

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

1.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
2.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3. 성실한 서비스 제공 의무

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

①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

1.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.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2.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.
3. 모든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4.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.
5.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.

②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

1. 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액 납부의 의무
2. 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협력할 의무
3.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
계약의 해제

- ①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 기간동안 발생하며,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② 계약해지는 서비스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서비스 이용 의사를 철회하면 해지된다. 다만, 해약의 통지는 종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.
- ③ 서비스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병원 입원,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
- ④ 서비스 제공자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서비스 대상자(또는 보호자)에게 통지하면 계약 해지된다. 다만,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수있다.
 1. 수급자의 상태가 위급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 2.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 3.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 4.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
 5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 6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 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서비스 내용

우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.

- ①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월 한도액, 장기요양급여비용, 유의사항 등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준하여 급여대상자와 계약을 통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.
- ② 방문요양 :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가정 및 개인의 생활공간에 방문하여 다음의 신체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.

- ③. 신체활동지원: 식사도움, 복약도움, 신체 청결관리, 이동도움, 체위변경, 화장실이용 등
- ④. 가사지원활동: 취사, 세탁, 청소, 장보기, 병원동행하기, 등
- ⑤. 정서지원활동: 말벗, 격려, 의사소통, 등
- ⑥ 인지지원활동: 인지자극활동, 치매예방 및 관리, 일상생활 함께하기, 등

지역사회자원연계

- ③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후 급여대상자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정을 위한 각종 상담,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.
- ④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·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, 기타 보건, 의료,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.
- ⑤ 보건소(군포031-461-5464, 지샘병원031-451-4277, 연세항맥외과031-393-3305) 치매안심센터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 의료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.